

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안경위

가. 발 의 자 : 박성연 의원 외 19명

나. 의안번호 : 제 744 호

다. 발의일자 : 2023. 5. 25.

라. 회부일자 : 2023. 6. 5.

2. 제안이유

가. 「하수도법」에 따라 부담금의 납부 방법을 조례에 규정하는 한편, 부담금의 분할 납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납부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원인자부담금의 납부 방법 및 분할 납부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 (제29조제1항제6호다목 및 라목 신설).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하수도법」

나. 예산조치 : 원안 참조

다. 기타 : 해당 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안은 「하수도법(이하 “법”)」 제61조제3항1) 및 제4항2)에 따라 ‘법 제61조제1항3)에 따른 원인자부담금(이하 “원인자부담금”)’의 분할납부와 납부방법(현금, 신용카드, 직불카드 등)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임.

[표 1] 개정안 주요골자(안 제29조제1항제6호다목 및 라목)

현행	개정안
제29조(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)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·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. 1. ~ 5. (생략) 6.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시기 등은 다음 각 목과 같다. 가. ~ 나. (생략)	제29조(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) ① ----- ----- ----- 1. ~ 5. (현행과 같음) 6. ----- 가. ~ 나. (현행과 같음) 다. <u>나목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납부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원인자부담금을 나누어 내도록 할 수 있다.</u>
<u><신설></u>	<u>라. 원인자부담금은 현금, 신용카드·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.</u>
<u><신설></u>	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
- 안 제29조제1항제6호다목은 시장이 승인하면 원인자부담금을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이고, 안 제29조제1항제6호라목은 원인자부담금을 현금, 신용카드,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

1) 「하수도법」 제61조(원인자부담금 등)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·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2) 「하수도법」 제61조(원인자부담금 등)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.

3) 「하수도법」 제61조(원인자부담금 등)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·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(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)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.

할 수 있도록 납부 방법을 규정하려는 것으로,

- 법 제61조제3항 및 제4항에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, 징수 방법, 납부 방법에 관해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은 이에 상응하는 조치라 하겠음.
- 또한,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와 관련하여 현행 「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」 제33조제6항에서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사업 등의 공사 기간이 1년 이상이고, 원인자부담금이 1억원 이상이면 부과권자와 납부의무자가 협의하여 분납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⁴⁾하고 있는데,
 - 「지방자치법」 제28조 및 제29조⁵⁾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, 법령에서 정한 조례 권한을 하위규칙이 정하는 것은 법 제28제2항을 위반할 소지를 담고 있다는 점과 조례와 시행규칙 간 조례체계를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살펴볼 때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에 대한 사항은 본 개정안과 같이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됨.

4) [서울특별시규칙 제3175호, 2001. 3. 20., 일부개정]

5) 「지방자치법」 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
제29조(규칙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.